



문서번호	행정지원과-5589
결재일자	2015.2.26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담 당	의회협력담당	행정지원과장	행정국장
이지영	서경택	이준기	02/26 손정수
협 조			



제23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결과 보고

2015. 2.

제23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결과 보고

I. 개 요

- 본 회 의 - 제1차 : 2015. 02. 03(화) 개회식
 - 제2차 : 2015. 02. 11(수) 안전처리 및 산회(폐회)

- 상임위원회 일정 : 2015. 02. 04(수) ~ 02. 10(화) 【7일간】

II. 안전 처리결과 현황(제7대)

□ 안전현황

구 분	계		상정안전		의원발의		비 고
	제232회	누 계	제232회	누 계	제232회	누 계	
운 영 위 원 회	2	3	-	-	2	3	
보건복지위원회	3	7	1	4	2	3	
도시건설위원회	3	14	2	12	1 보류	1	
행정기획위원회	5	23	5	22	-	1	
계	13	47	8	38	5	8	

□ 위원회별 처리현황

구 분	계		원안가결		수정가결		보류·부결	
	제232회	누 계	제232회	누 계	제232회	누 계	제232회	누 계
운영위원회	2	3	2	3	-	-	-	-
보건복지위원회	3	7	2	6	1	1	-	-
도시건설위원회	3	14	2	11	-	2	1 보류	1
행정기획위원회	5	23	4	17	1	6	-	-
계	13	47	10	37	2	9	1	1

□ 본 회의 처리 현황

구 분		계		원안가결		수정가결		보류·부결	
		제232회	누 계	제232회	누 계	제232회	누 계	제232회	누 계
조 례	제 정	3	8	2	6	-	1	1 보류	1
	개정(폐지)	7	16	5	11	2	5	-	-
의견(동의)청취		3	13	3	12	-	1	-	-
예·결산(승인)안		-	3	-	1	-	2	-	-
기타(공유재산, 결의안 등)		-	7	-	7	-	-	-	-
계		13	47	10	37	2	9	1	1

Ⅲ. 처리내용

상정안건(주요내용) - 8건	주관과	위원회명
<p>◇ 보건복지위원회(1건)</p> <p>1.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 신규 체육시설 설치에 따라 사용료 감면 대상 시설을 추가하고 우리구 체육시설 현황을 현행화 하여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</p>	<p>문화체육과 의안번호: 44</p>	<p>원안가결</p>
<p>◇ 도시건설위원회(2건)</p> <p>1.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4축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(안) - 길음4축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 16조의2(조합설립인가등의 취소) 제1항에 의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조합해산 요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(성북구고시 제2014-40호, 2014.03.20.)하고, 동법 제4조의3(정비구역등 해제)제1항 5호 규정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30일 이상 주민공람 절차를 이행한 후 동법 동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</p>	<p>주거정비과 의안번호: 45</p>	<p>의견채택</p>
<p>2.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5 주택재건축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경미한 변경) 및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(안) - 정릉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(예정)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,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</p>	<p>건축과 의안번호: 46</p>	<p>의견채택</p>
<p>◇ 행정기획위원회(5건)</p> <p>1.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사회적 약자 참여 보장을 위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, 역량 있는 주민의 폭넓은 직접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위원 임기를 축소코자 하며, 기타 직제개편(2015.1.1. 시행)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정비하고자 함</p>	<p>마을담당관 의안번호: 47</p>	<p>수정가결</p>
<p>2.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 성북구 직제 개편 시행(' 15.1.1)에 따른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및 위원의 임면사항을 정비하고, 기타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입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.</p>	<p>마을담당관 의안번호: 48</p>	<p>원안가결</p>

<p>3. 마을·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(안)</p> <p>- 종암로25길 29, 마을·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『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』제23조 (관리·운영 위탁) 제1항 및 『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』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제3항에 “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동의(안)를 얻어야 한다”고 규정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동의안을 제출함.</p>	<p>사회적경제과 의안번호: 49</p>	<p>원안가결</p>
<p>4. 서울특별시 성북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</p> <p>- 담배소매인 사실조사 수행 기관의 공정경쟁 촉진 및 사실조사의 객관성 제고를 위한 자격요건을 개선하고,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용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임.</p>	<p>일자리경제과 의안번호: 50</p>	<p>원안가결</p>
<p>5.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</p> <p>- 「도로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 및 「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」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 후속조치로, 점용허가대상 및 점용료 산정기준, 과태료 부과 등 관련 조항과 인용조문을 개정하여 입법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</p>	<p>재무과 의안번호: 51</p>	<p>원안가결</p>

<p>의원발의(주요내용) - 5 건</p>	<p>주관과</p>	<p>위원회명</p>
<p>◇ 운영위원회(2건)</p>		
<p>1.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</p> <p>-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정하여 효율적인 정례회 운영 및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가능하게 하고, 기타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함.</p>	<p>의회사무국 의안번호:55</p>	<p>원안가결</p>
<p>2.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 표창 조례(안)</p> <p>- 현행 의회규정으로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표창 규정을 자치법규인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의 위상을 격상시키고, 표창대상자들의 자부심과 긍지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함</p>	<p>의회사무국 의안번호:56</p>	<p>원안가결</p>

<p>◇ 보건복지위원회(2건)</p>		
<p>1.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(안) - 송영옥의원 -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비하여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.</p>	<p>어르신복지과 의안번호: 53</p>	<p>원안가결</p>
<p>2.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 조민국의원 - 「국민건강증진법」제9조의5 및 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」제16조의4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, 단독직무 수행 절차, 활동수당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를 위한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</p>	<p>건강정책과 의안번호: 54</p>	<p>수정가결</p>
<p>◇ 도시건설위원회(1건)</p>		
<p>1.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(안)-목소영의원 - 2013.12.24.「주택법」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- 감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함.</p>	<p>주택관리과 의안번호: 52</p>	<p>보 류</p>

※ **보류안건 - 1 건**

- 회 기 : 제232회 임시회(2015. 2월)
- 의안번호 : 52
- 소속위원회 : 도시건설위원회
- 안 건 명 :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(안)
- 보류사유 : 서울시 표준조례안 제정후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처리함.

● 수정가결 주요내용

1.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- 마을담당관

○ 수정이유

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위촉 규정을 수정하여 역량 있는 주민의 폭넓은 직접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.

○ 주요내용

- 제10조제1항 본문 중 “2년”을 “1년”으로 하되,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를, “1년”으로 하되,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으나, 임기 종료 후 2년 이내에는 위촉할 수 없다로 수정
- 부칙 제2조(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부터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재임 중인 위원을 포함하여로 수정
- 부칙 제3조(경과조치)는 삭제

2.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- 건강정책과

○ 수정내용

- 제17조 제2항 중 “1년 단위로” 를 “1회에 한하여” 로 수정